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위탁) 사업**

수행기관 대표자 간담회

2020. 8.

안전보건공단

PART 1. 용역계약 특수조건

1. 계약 보증금, 선금

▶ (용역사업명)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밀착지원”)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5/100이상으로 납부

▶ (선금)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 사업장 최종선정 이후, 계약금액의 80/100 이내

▶ (선금 채권확보) 선금에 대한 보증금(증권, 보증서 등) 납부

▶ (선금 사용) 밀착지원 용역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금지, 노임지급 등에 우선 사용

▶ (선금 사용내용서) 선금전액 사용 시 사용내용서 제출

PART 1. 특수조건

2. 수수료의 지급 및 제한

- ▶ (수수료) 계약사업장 당 정기밀착지원(150천원/회) 5회, One-point지원(60천원/회) 1회 이내에서 지원횟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 사업장 기술지원은 정기밀착지원 5회 이상, One-point지원 1회 이상 실시

▶ (지급제한) 사업평가 시 수수료지급을 제한함

- 이전, 부도, 폐업 등 비대상 사업장 기술지원(산재가입정보 기준)
- 과업내용서의 지급제한 조건, 과업내용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 “민간위탁”사업 대상, 신청일 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밀착지원 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 시
- 수행기관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위탁(50인 미만 회원사관리 포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시



PART 1. 특수조건

2. 수수료의 지급 및 제한

- 위탁사업장, 회원사관리 사업장 명단을 미제출한 기관도 동일하게 수수료 지급제한
- 법정공휴일, 토요일 기술지원
- 계약물량(횃수)을 초과하는 지원횃수에 대한 사업수행비
- 동일날짜에 공단의 2개 이상의 광역본부 권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 밀착지원과 유사한 성격의 공단 용역사업(민간위탁사업 등) 또는 안전관리 일반대행 (50인 미만 회원사 관리 포함)을 동일날짜에 수행한 경우 해당 날짜의 기술지원
- 수행기관의 영업정지 기간의 기술지원 실시분

▶ (성과금) 공단에서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수수료 예산과 별도) 내에서 지급, 지급기준은 사전공지하되 이의제기 금지

PART 1. 특수조건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 해제·해지) 공단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정기밀착 지원횟수 또는 지원사업장수의 월간 누적실적이 평균진도율 70%미만 경우
- 사업 수행기관 자격(안전관리전문기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미방문 후 허위보고, 허위작성, 미채용자 또는 미자격자의 기술지원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 수행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보안유지각서 내용을 위반하여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PART 1. 특수조건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채용예정인력의 채용확인 서류를 `20.8.28(금) 18:00까지 미제출한 경우
- 기타 용역계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민원을 발생하는 경우
- 수행기관 또는 수행요원이 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클린사업이 나 공단 이외 기관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 밀착지원 수수료 이외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사업 공모 시 제출한 인력운영계획을 하향하는 경우

▶ (대가의 이중청구 금지)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공단 지급 수수료 이외에 따로 수수료 청구 금지

PART 1. 특수조건

4. 명단 제출, 사업물량 변경

▶ (위탁 사업장 등의 명단 제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업무 위탁사업장(50인 미만 회원사 관리 사업장 포함) 리스트를 공단에 제출

- 밀착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 체결 전
- 변경이 있는 경우, 매월 첫째 수요일

▶ (사업물량의 변경) 경기변동, 휴폐업 등에 따라 사업물량이 계약물량보다 적은 경우 공단은 책임지지 않으며,
수행기관이 참여자격과 관련하여 업무정지 등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동안 밀착지원 사업 수행 정지하고, 공단은 정지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

PART 1. 특수조건

5. 인력운영계획 준수, 수행요원 고용 유지

- ▶ (인력운영계획 등의 변경) 인력운영계획, 자율적/창의적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공단 승인을 받고, 보완요청 시에는 10일 이내 보완한다.
 - 인력운영계획은 공고 시 제출한 수행요원의 자격 및 경력보다 하향하지 못함

- ▶ (수행요원) 사업수행기간동안 수행요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
 - 수행요원별 4대 보험 완납(가입)증명서, 기술자격 증빙서류 제출
 - 사업 수행기간 동안 수행요원 변경 금지. 다만,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 공단 승인
 - 공단은 민원야기, 불성실한 수행,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수행요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은 1개월 이내 교체

PART 1. 특수조건

6. 사업참여 제한

▶ (차기년도사업 참여제한) `20년도 사업수행평가결과 부적격 기관,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된 수행기관은 밀착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전 분야 참여 배제

▶ (업무정지 등의 보고) 안전관리전문기관 업무 지정취소, 정지, 과징금 부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고 발생 등의 경우 공단에 즉시 보고하고,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밀착지원 사업 정지

- 업무정지의 경우 정지기간 이후 사업 수행계획을 공단에 제출

PART 1. 특수조건

7. 계약 연장

- ▶ (계약 연장) 공단은 연도말 차기년도 사업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행기관 과 차기년도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1년 사업예산이 미확보되는 경우
 - `20년 사업수행평가 결과 수행기관이 부적격 등급 받은 경우
 - 본 용역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21년도 계약물량을 일부 또는 전부 반납하는 경우
 - 계약 체결 시점에 참여자격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 계약물량(사업장수, 지원횟수) 및 수수료는 `20년 계약물량 및 수수료 기준 단, 예산변경이나 정책변경으로 사업물량이 조정되는 경우 계약물량 및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 공단은 연도 말 사업계속 여부 및 조건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통보한다

PART 1. 특수조건

8. 계약물량의 취소 · 조정

- ▶ (계약물량의 취소·조정) 공단은 계약일 이후 지정한 날까지 계약상대자의 사업 물량이 계약물량에 미달하여 계약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물량을 취소 또는 조정하고 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 계약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ART 2.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 목적 ●

- ▶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업종·규모**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지원 등...

● 사업대상 ●

- ▶ (대상) 50인 미만 제조업(상시근로자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 기준)
- ▶ (제외) `20년 민간위탁사업 기술지원 사업장, 밀착지원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 ▶ (중복지원 불가) 밀착지원 사업 참여 수행기관의 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및 회원사 관리 사업장(신청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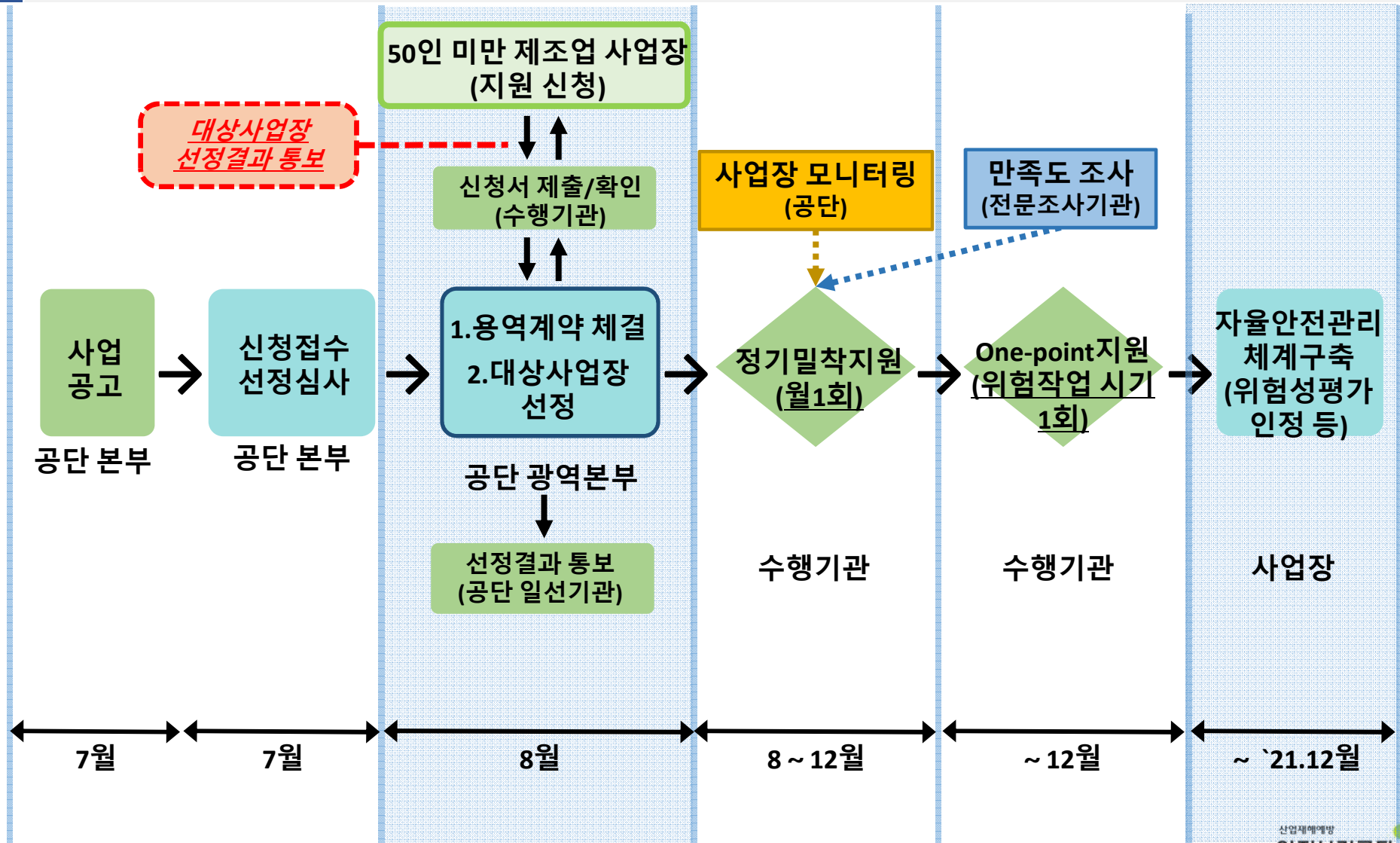
PART 2. 사업개요

2. 사업 규모

- ▶ 사업물량 : 4,700개소(28,200회, 정기밀착지원 : 23,500회 + One-point지원 : 4,700회)
- ▶ 수수료 :
 - 정기밀착지원 : 150천원/회
 - One-point지원 : 60천원/회
- ▶ 성과금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지급
 - (대상) 권역별 사업평가 상위기관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 (규모) 권역별 사업물량(사업장수) 30%에 해당하는 사업장수에 100천원/사업장 규모
 - (위험도) 제조업 중업종X규모별 사업장당 사고사망자 매트릭스에 따른 위험도 비율 가중
 - (상세) 세부 기준 추후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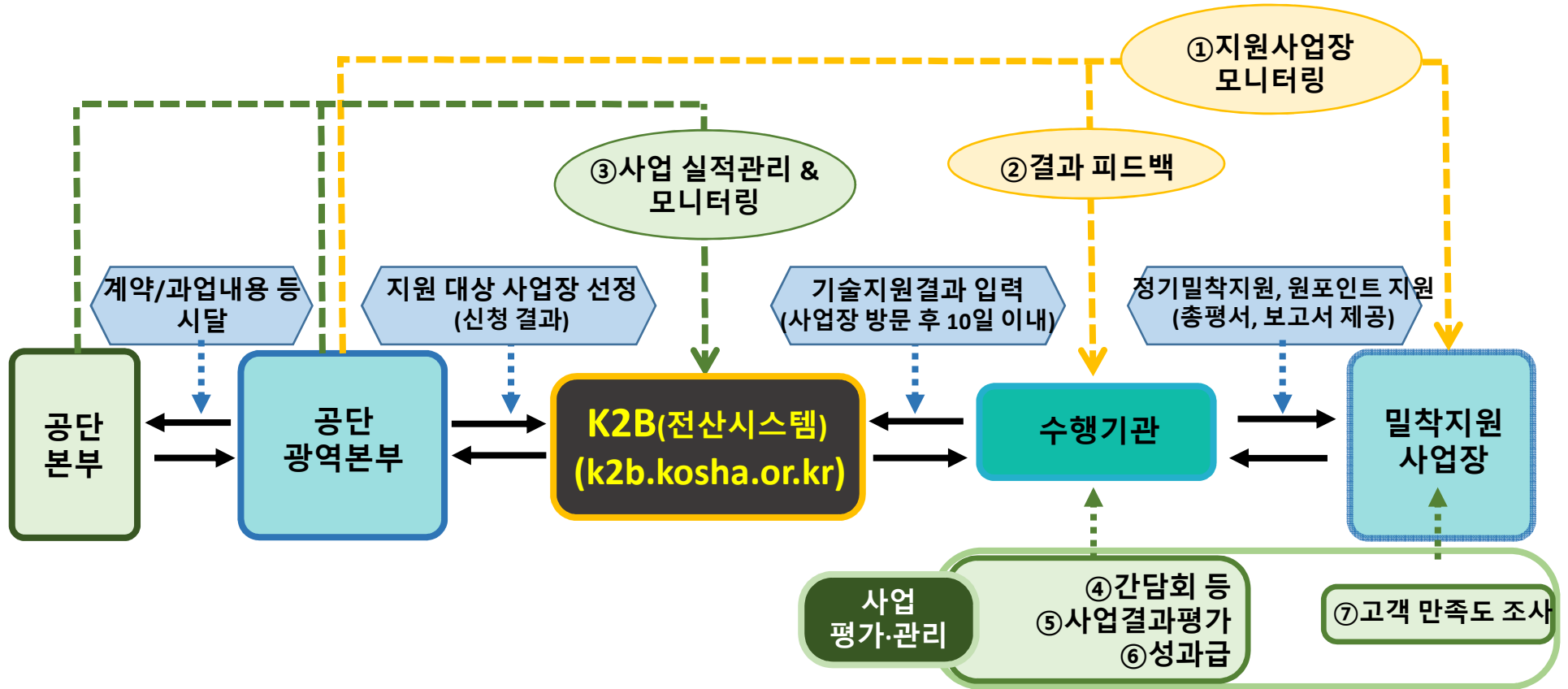
PART 2. 사업개요

3. 사업추진 절차



PART 2. 사업개요

4. 사업관리 체계



PART 2. 사업개요

5. 수행요원

- ▶ (교육) 계약 체결 후 수행요원 직무교육 실시
 - 최소 4시간 이상(교육기록 작성 보존 필요)
 - 수행요원의 현장 안전 유의 사항 포함
 - 과업내용서, 사업수행 제한요건 등
- ▶ (고용유지) 공모 신청 시 제출한 인력운영계획서의 수행요원 변경 금지
 -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 공단 사전 승인(대체 요원의 자격, 경력요건 하향 금지)
 - 채용 예정 인력의 증빙서류는 8.28(금) 18:00까지 공단 광역본부에 제출
- ▶ (교체요구) 불성실 수행, 부정행위, 민원야기 등의 수행요원은 교체요구
 - 각 수행기관은 수행요원의 고용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 필요

PART 2. 사업개요

6.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사업평가

- ▶ (모니터링) 수행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사업장 개선의지, 과업내용 적정 수행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피드백
 - 공단 본부, 일선기관
- ▶ (만족도조사) 사업대상의 약 30%, 1500개소 전화·방문조사
 - 수행기관별로 조사하고, 사업평가에 반영
 - 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
- ▶ (사업평가) 11~12월경 사업수행내용, 성과 등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추후 공지
 - 부적격등급 기관 `21년 재계약 불가
 - 평가 결과 하위(60%, 70%) 기관은 신규물량 제한
 - 상위기관은 성과금 지급